

[별표 3] <개정 2005.8.5>

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·설치지역·설치조건(제18조제2항관련)

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	설치지역	설치조건
1.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등과 관련된 시설 가. 임도 나.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(주거용을 제외한다) 다.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라. 임산물을 가공·건조·보관하기 위한 시설 마. 비료·농약·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바. 운재로 및 작업로	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	「산림법」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·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운재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배향곡선지·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.
2.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로서 산불감시탑·방화선·간이무선통신시설·간이저수조·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	제한없음	제한없음
3. 수목원·자연휴양림·산림욕장·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,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·관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	제한없음	(가)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「산림법 시행령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 (나) 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

		(다) 「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(라)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·관리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
4.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	제한없음	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·학부 등이 설치된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5.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	준보전산지	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.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6.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
7.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	제한없음	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. 다만, 연구·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8.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,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	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	제1호 내지 제7호의 설치조건 등 부지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면적 안에서 설치될 것
9. 가축의 방목	준보전산지	제12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
10.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	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	「문화재보호법」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일 것

다. 농축수산물의 창고·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(2)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미만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.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. (1)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(2)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: 1천제곱미터 미만 (3) 수산물의 창고·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: 1천제곱미터 미만
라. 농막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
마.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(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)	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	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
바.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	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	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

※ 비고 : 「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제1호·제5호·제6호·제9호·제11호·제12호 및 제13호 (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)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재배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제외한다.